

지구화 시대의 정의(正義)

: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 검토

김 원 식

주제분류 사회철학, 정치철학, 서양현대철학

주요어 지구적 정의, 정의론, 낸시 프레이저

요약문

오늘날 가속적 지구화는 그동안 국제질서를 비롯한 기본적인 삶의 질서를 지배해 오던 ‘국민국가’ 틀을 동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변화들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과 사회정의에 대한 기존 담론들에 대해서도 역시 새로운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구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정의의 근본 문법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정의론 구상을 중심으로 오늘날 지구화가 사회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도전들과 그에 대한 대응의 원칙적 방향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나는 사회정의의 내용, 당사자, 방법이라는 구별을 중심으로, 지구화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들과 그에 대한 원칙적 대응 방향들에 관해 프레이저가 전개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논의들이 오늘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본다.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가속적 지구화는 그동안 국제질서를 비롯한 기본적인 삶의 질서를 지배해 오던 ‘국민국가’ 틀을 동요시키고 있다. 지구화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호작용의 빈도와 밀도를 급속히 증가시키면서 기존의 국민국가 틀로는 접근하고 대응할 수 없는 다양한 새로운 도전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 변화들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과 사회정의에 대한 기존 담론들에 대해서도 역시 새로운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민국가 단위 내에 제한되어 진행되어 온 기존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기획들은 일종의 방향상실 상태에 처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오늘날 지구화 과정 속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회정의의 ‘내용’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가 요구되며, 나아가서 사회정의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정의의 내용과 당사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화로 인한 이주의 증대와 문화적 접촉의 확대는 기존의 경제적 분배 정의의 틀로 환원될 수 없는 각종 인정 투쟁들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지구적 이동이나 지구적 빈곤의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국가 단위의 당사자라는 틀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범위에서의 정의 요구를 역시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서 정의의 내용과 당사자에 관한 이러한 논란의 확대는 오늘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합의를 산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지구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정의의 근본 문법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¹⁾ 이 글의 목적은 낸시 프

1) 이러한 성찰은 지구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구적 차원의 규범적 사회비판이론 구축 시도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구적 차원의 규범적 사회비판이론의 필요

레이저(Nancy Fraser)의 정의론 구상을 중심으로 오늘날 지구화가 사회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도전들과 그에 대한 대응의 원칙적 방향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²⁾ 아래에서는 사회정의의 내용, 당사자, 방법이라는 구별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화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들과 그에 대한 원칙적 대응 방향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논의들이 오늘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지구화의 도전과 정의론의 과제

‘전지구적 전환’ 과정이 가속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 질서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원칙은 여전히 국가주권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국제 질서의 근본 원리로 널리 인정되어 온 국가주권은 대외적으로는 배타적인 성격을 대내적으로는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각각의 국민국가는 대외적으로는 독립의 권리를 가지며, 각 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대내적으로 국가주권은 분할 불가능한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었다.³⁾ 이러한 베스트팔렌적 질서를 배경으로 하여 기존의 정의 담론 역시 특정한 정치공동체, 즉 영토국가 내부에 거주하는 시민들 사이의 정의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탐구하

성 및 시도들에 대해서는 문성훈, 「칸트의 세계시민사회이념과 인정」, 『사회와 철학』 19호, 2010, 188-193쪽 참조.

2) 낸시 프레이저의 새로운 정의론에 대한 구상은 *Scales of Jus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에 집약되어 있다. 아래에서 이 저서는 SJ로 약기하여 본문 내에 그 출처를 표기하도록 한다.

3) 물론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침탈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국가주권에 대한 인정은 선별적으로만 실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식민지 민중들 역시 대부분 그들의 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국가주권이 보편적인 규범적 목표로 기능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는 데에 주로 집중하여 왔다.

특히 서구사회의 경우 사회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지난 시기에는 시장에 대한 국민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스주의적-베스트팔렌적 틀”이 정의에 관한 논쟁들을 주로 지배해 왔다.⁴⁾ 사회민주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 여성주의자와 다문화주의자들은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서로 상이한 의견들을 가지고 대립하였지만, 그들 모두는 정의의 범위와 당사자가 국민국가 내의 시민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다(SJ, 30쪽).

그러나 영토국가 원리에 기초한 이러한 틀에 대한 합의는 오늘날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흐름 속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도전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가속화 되고 있는 지구화 과정은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국가의 자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나 새로운 테러의 양상들이 보여주듯이 오늘날 안보와 치안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본의 지구적인 이동이 초래하는 문제나 지구적 빈곤의 문제 역시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접근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대규모 이주와 초국적 대중 매체를 통해 문화 접촉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지구적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초국적 공론들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기존의 ‘베스트팔렌적 틀’이 ‘탈베스트팔렌적 틀’로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아직 ‘탈베스트팔렌적 틀’은 전혀 안정화 되거나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민국가의 제한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4) 프레이저는 전후 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 즉 대략 1945년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동안 “케인스주의적-베스트팔렌적 틀”이 정의에 관한 논쟁의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J, 12쪽, 주석 1 참조).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 단위 실험 이외에는 아직 국민국가를 기초로 한 삶의 질서를 대체할 지구적 대안의 가능성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는 지구적 차원에서 불안정한 질서 이행의 흐름이 지배하고 있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화가 초래하는 각종 도전들은 국민국가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는 관련된 담론들 역시 정상적 형태가 아닌 ‘비정상적 형태’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⁵⁾ 사회정의에 관한 기존 담론이 통약 가능한 안정된 기존의 틀을 상실하게 되면서 정의의 내용, 당사자, 방법에 관한 각종 논란들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1) 정의의 내용: 재분배, 인정, 대표

정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기존의 분배 정의라는 틀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정의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롤즈의 『정의론』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정의론들은 주로 폐쇄적인 국민국가 단위에서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그 중심 목표로 삼고 있었다.⁶⁾

이러한 분배 중심의 정의 담론은 먼저 서구 선진 국가들의 경우 국민국가 단위의 사회민주주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서구의 복지국가는 국가 개입을 통한 경제적 이해 조정과 복지정책을 배경으

5) 프레이저가 사용하고 있는 정상적 담론과 비정상적 담론이라는 구별은 정상과학에 대한 쿤(Thomas S. Kuhn)의 구별을 차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토마스 쿤, 김명자 옮김, 『과학혁명의 구조』, 동아출판사, 1995, 31쪽 이하 참조.

6) 존 롤즈, 황경식 옮김, 『사회정의론』, 서광사, 1985. 롤즈는 사회정의의 원칙을 “적절한 분배의 틀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원칙들의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책, 26쪽. 알짜의 경우 사회적 의미가 분배와 가지는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분배 정의를 본질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사회는 분배공동체이며, 모든 사회갈등 역시 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마이클 왈찌, 정원섭 외 옮김, 『정의와 다원적 평등-정의의 영역들』, 철학과현실사, 1999, 29쪽, 39쪽.

로 하는 계급타협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회정의는 주로 복지정책을 통한 공정한 경제적 자원의 분배 문제로 이해되었다. 과거 제2세계나 제3세계에서도 역시 분배 정의 담론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산주의 이념을 지향한 제2세계는 계급 불평 등의 해소를 그 체제의 주된 목표로 삼았으며, 경제성장을 당면 목표로 삼고 있던 제3세계에서도 역시 사회정의의 문제는 주로 공정한 경제적 분배의 문제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분배 정의라는 틀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의는 주로 국민국가 단위에서 경제적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분배 정치의 지배적 지위는 오늘날 다양한 방면에서 도전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J, 107쪽). 먼저 서구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과 분배로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정치적 요구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68혁명 이후 등장한 신사회운동들은 경제적 재화의 분배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새로운 정치적 요구들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운동은 여성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였으며, 탈물질적 가치가 확산되면서 삶의 질과 참여의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주의 증대로 인해 다문화주의의 도전도 제기되었다. 또한 현존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은 민족주의의 부활과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거대한 정치적 갈등을 산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체성 정치의 부상은 기존의 분배 정의 요구로는 포섭될 수 없는 새로운 정의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또한 지구화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요구들의 등장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상이한 정의 요구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까지도 전개되

7) 바꾸만은 정체성 정치의 부상 원인을 유동하는 현대가 조장하는 불안감의 확산에서 찾고 있다. 지구화 과정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회적 유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그들이 매달릴 작은 공동체, 안정된 정체성을 열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Zygmunt Bauman, *Identity*, Polity Press, 2004, 45쪽 이하 참조.

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 규제와 환경 규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보호주의로 비판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자. 이 경우 한편으로는 국민국가 틀과 탈국민국가 틀의 충돌이 발생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결권 요구와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분배 요구가 부딪치게 된다. 또한 우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적 분배에 집중하는 분배주의자들과 문화적 인정을 강조하는 ‘문화적 좌파들’ 사이의 논쟁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⁸⁾ 분배주의자들은 문화적 좌파들이 파상적인 문화적 문제들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에 문화적 좌파들은 분배주의자들이 차이의 문제에 둔감하다고 비난한다.⁹⁾ 이러한 상황들은 다양한 정의 요구들의 등장과 이 요구들 사이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때 오늘날 정의론은 정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의 차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이러한 차원들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종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범적인 틀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적 부정의의 차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해 내면서 그것이 어떤 사회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부정의들인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그것들을 통약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보편적인 규범적 기준은 무엇인지 역시 제시해

8) 로티는 미국 신좌파의 후예들에 의해 대학 강단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좌파를 문화적 좌파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유선, 『리차드 로티』, 이룸, 2003, 203쪽 이하). 바우만 역시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면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인정투쟁의 괴이상태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바우만, 앞의 책, 35쪽 이하 참조.
9) 프레이저는 정체성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분배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문화적 좌파들의 입장에 대해서 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녀는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체성 문제에 주목하는 문화주의가 신자유주의가 산생시킨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 능력을 상실하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SJ, 6장 참조.

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이한 정의 요구들을 통약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요구와 저항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연대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프레이저는 분배, 인정, 대표라는 정의의 세 차원을 제시하고, 이를 통약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포괄적인 정의의 규범적 기준으로 ‘동등한 참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프레이저는 정의의 핵심을 ‘동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의 원칙으로 규정한다.¹⁰⁾ 정의는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동등한 참여의 원칙은 한편으로 무엇이 정의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모두가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의를 규정하는 절차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사태가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결과를 평가하는 규범으로도 가능하다(SJ, 28-29쪽)¹¹⁾ 결국 동등한 참여의 원칙은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과 그것이 성립하게 될 절차 모두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등한 참여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정의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 역시 잘 보여주고 있다. 정의는 당사자들의 동등한 민주적 논의와 참여를 통해서만 비로소 확정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기준으로 삼으면 사회적 부정의는 이제 동등한 참여를

10) Nancy Fraser and Axel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2003, 36쪽. 프레이저가 말하는 동등성은 엄밀한 수적 동등성이기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동료로서 참여하기 위한 조건 일반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동등성이 보장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같은 곳, 주석 39 참조.
11)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참여의 원리는 ‘민주적 정의론’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하버마스의 담론원칙, 민주주의 원칙을 정치, 경제, 문화적 삶의 영역 전반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버마스의 담론원칙, 보편화 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김원식, 『인권의 근거: 후쿠야마와 하버마스의 경우』, 『사회와 철학』 13호, 2007, 65쪽 이하 참조.

저해하는 각종 사회적 요인들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동등한 참여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역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합당하게 대표(representation)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 영역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등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재)분배((re)distribution)받을 수 있어야 하고, 문화적 영역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등한 참여를 위한 지위를 인정(recognition)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¹²⁾ 사회적 부정의는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경제적 영역에서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불평등 분배의 문제가, 문화적 영역에서 정의로운 인정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무시(無視)가, 정치적 영역에서 정의로운 참여가 부정될 때 대표 불능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사회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물질적 재화를 분배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필수적인 물질적 재화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분배되지 않는 경우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적 부정의의 한 유형이 된다. 또한 사회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대한 문화적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무가치한 존재로 낙인찍히고 무시당한다면, 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적 삶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문화적 무시는 사회적 부정의의 한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고유한 정치적 부정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들이

12) 프레이저의 ‘대표(representation)’라는 개념은 내쉬(Kate Nash)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애매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SJ 144쪽). 이 개념은 민주적 대의라는 직접적 의미와 함께 틀의 설정을 통해 정의의 당사자로 포섭되고 표현된다는 상징적인 의미 역시 담고 있다. 때문에 번역과 관련하여 이행남은 이 용어를 ‘대의/표현’으로 옮긴 바 있고 백미연은 대표를 사용하였다(『뉴레프트리뷰』, 2009, 442쪽의 옮긴이 주와 백미연, 『글로벌 시대 정의의 범위』,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2009, 54쪽 각주 7 참조).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말의 대표라는 개념을 통해 이 두 의미를 모두 담아내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하여 misrepresentation은 대표 불능으로 옮겼다.

정치적 발언권 자체를 박탈당하고 배제당하는 경우, 잘못된 제도를 통해서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하는 경우 정치적 대표 불능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정치적 차원, 경제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야기되는 이러한 각각의 고유한 부정의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부정의들은 실제로 그것들이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에게 환원될 수 없는 고유성을 갖는다.¹³⁾ 현실 속에서 이러한 사회적 부정의들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무시 받는 개인이나 집단은 경제적 재화의 분배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마련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무시 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원할하게 대변될 수 없으며,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적 인정이나 경제적 분배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마련이다. 인정 없는 분배도 분배 없는 인정도 불가능하며, 대표 없는 분배나 인정도, 분배나 인정 없는 대표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분배, 대표와 관련된 부정의는 각각 그 원인과 효과에서 환원 불가능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정의들이 문화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문화적 차원의 부정의가 경제적 구조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충분한 문화적 인정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구조적인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불평등한 분배를 받을 수도 있으며, 충분한 경제적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문화적 무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경제적 문화

13) 그간 프레이저는 인정과 분배를 중심으로 이차원적 정의관을 고수하여 왔으나 최근 정치적 대표의 차원을 추가하면서 3차원적 정의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정치적 차원에 고유한 사회적 부정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는 SJ, 145쪽 이하 참조. 이는 정치적 차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여러 논평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평의 한 예로는 Leonard C. Feldman, “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the State: The Irreducibly Political Dimension of Injustice”, *Political Theory*, Vol 30, 2002년 6월 참조.

적 차원과는 독립적으로 고유한 정치적 대표 불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정치, 경제, 문화적 차원의 사회질서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과 독자성에 대한 사회이론 차원의 논의를 전제하고 있다.¹⁴⁾

동등한 참여라는 규범적 원칙에 근거한 프레이저의 3차원적인 정의론 구상은 사회적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층적인 사회적 부정의들을 식별해낼 뿐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저항들이 동등한 참여라는 동일한 규범적 목표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저항들의 연대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구화 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부정의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의론 구상은 분배 중심의 정의론을 넘어서 다층적인 정의론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2) 정의의 당사자: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

정의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의의 당사자가 더 이상 기존의 국민국가 틀로만 제한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케인스주의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국민국가 단위에서 정부가 국가 경제에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일국 단위에서 분배 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분배 정의 문제는 특정한 정치공동체 내부에 거주하는 시민들 사이의 분배 정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었다.¹⁵⁾

그렇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흐름과 초국적 경제기구나 기업들의 등장은 선진국들에서조차 국가 경제에 대한 개별국가의 정책적 대응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 시민들의 경제적 불평등이 그 국

14) 지면의 제한 상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김원식, 『인정과 재분배』, 『사회와 철학』 17호, 2009 참조.
15) 물론 이러한 상황이 다른 한편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에 대한 착취나 불공정 거래를 그 대가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가 외부에서의 결정들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정의에 대한 요구를 국민국가 단위로 제한하는 것은 예를 들어 취약한 국가나 실패한 국가 시민들의 경우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정을 시정할 수단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국제적인 환투기세력들, 초국적 경제기구, 다국적 기업의 결정들은 개별 국가의 정책만큼이나 시민들의 경제적 삶의 수준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나아가서 단지 경제적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사안에서 외부 주체들의 결정이 행사하는 영향력들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다양한 형태의 초국적 공론들과 저항들 역시 출현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이라크 침공 결정에 대한 세계적 규모의 시위, 반복되는 반세계화 시위, 지구 온난화에 대한 반대 운동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¹⁶⁾

이러한 상황은 정의의 당사자에 관한 이론적 담론 내부에도 역시 투영되고 있다. 롤즈의 『만민법』에서의 당사자 규정을 둘러싼 논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롤즈는 그의 저서 『만민법』에서 분배와 관련된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국민국가 내부로 한정하였다.¹⁷⁾ 각각의 국민국가 단위의 경제적인 삶의 조건은 주로 그들 자신의 결과와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국민국가를 넘어선 국제적, 지구적 단위에서는 정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롤즈는 부유한 사회나 민족이 가난한 사회나 민족에 대해서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의의 권리와는 구별되는

16) 프레이저는 롤의 통어가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세계 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에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그녀는 여기서 발견되는 초국적 수준에서의 해방적인 평등주의 흐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Nancy Fraser, Alfredo Gomez-Muller, Gabriel Rockhill, "Global Justice and the Renewal of Critical Theory, A Dialogue with Nancy Fraser", *Eurozine*, www.eurozine.com, 2009.4.1 참조.

17) 베이글은 롤즈의 평등주의가 개인적인 차원도 국제적인 차원도 아닌 오직 국민국가 내부 수준에서만 적용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Thomas Nagel, "The Problem of Global Justic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3, 2, 2005 봄, 123쪽.

차원의 문제다.¹⁸⁾ 분배 정의와 관련된 문제는 특정한 정치공동체, 즉 영토국가 내부에서만 논의될 수 있으며, 그 사회의 구성원들만이 분배 정의의 달성에 참여하고 요구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주의자들(internationalists)과 세계시민주의자들(cosmopolitans)은 오늘날 특정 국가의 삶의 조건은 단지 그 내부적 요인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의 영향력과 상호의존관계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분배 요구가 정당하다고 역설하였다. 국제주의자들은 빈곤한 국가의 집합적 인민들이 부유한 국가의 인민들에 대해서 재분배를 요구할 정당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세계시민주의자들은 빈곤한 국가의 개인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개인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⁹⁾

한 예로 지구적 정의에 대한 대표적 논자 중 하나인 포거(Thomas W. Pogge)는 지구적 빈곤층에 대한 재분배가 오늘날 도덕적 의무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첫째, 잘못된 과거 역사로 인해서 지구적 빈곤층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으며, 둘째, 인류 전체가 동일한 자연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한 나라들만이 이러한 자원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셋째, 인류 전체가 단일한 지구적 경제 질서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적 빈곤층에 대한 재분배 의무를 정당화 하고 있다. 특히 그는 롤즈의 논의가 지구적 경제 질서가 저개발 국가 주민들의 빈곤과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모든 책임을 빈곤한 국가들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하였다.²⁰⁾

이러한 논쟁의 전개는 기존의 삶의 질서를 지배해오던 베스트팔렌적 틀 자체가 고유한 부정의를 산출하고 있다는 인식이 이미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화 하는 삶의 조건에서 영토국가 단위 틀의 당사

18) 존 롤즈, 장동진 외 옮김, 『만민법』, 아카넷, 2009, §15, 16 참조.

19) 프레이저는 Charles R. Beitz, Thomas Pogge 등을 국제주의자로, Charles Jones, Martha Nussbaum 등을 세계시민주의자로 거명하고 있다.

20) Thomas W. Pogge, "Priorities of Global Justice in *Global Justice*, ed. Thomas W. Pogge, Blackwell, 2001, 14쪽 이하 참조.

자 규정만을 고집하는 것은 특정한 집단과 개인들의 정치적 요구를 배제하고, 초국적 세력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²¹⁾ 프레이저는 이를 ‘잘못 설정된 틀(misframing)’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부정의라고 규정하고 있다(SJ, 19쪽 이하). 틀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들에 대한 총체적인 배제가 발생하며, 이렇게 배제된 사람들은 분배, 인정, 대표 모두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²²⁾ 기존의 베스트팔렌적 틀은 지구적 빈곤층의 정의 요구들을 취약하거나 실패한 국가 내부로 제한하고, 동시에 다양한 초국적 세력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고유한 부정의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³⁾

때문에 그녀는 국민국가 내부의 시민들이라는 당사자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당사자 규정 원칙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the all-subjected principle)을 정의의 당사자 규정을 위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의의 주체, 당사자를 규정하는 데서 대체로 지금까지는 시민권 원칙, 휴머니즘 원칙, 관련된 모든 당사자 원칙이 제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SJ, 64쪽). 시민권 원칙은 베스트팔렌적 틀을 고수하면서 영토국가의 시민들만이 정의의 주체이자 당사

21) 버틀러 역시 사회비판과 관련하여 틀(frame)의 중요성을 지적한바 있다. *Frames of War*에서 버틀러는 이라크 전을 염두에 두면서 국민국가 단위 프레임이 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이 가하는 폭력성을 은폐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기술들 자체에 예를 들면 테러라는 규정 자체에 이미 해석의 특정한 틀(frame)이 전제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Judith Butler, *Frames of War*. Verso, 2009, 155쪽 이하).

22) 프레이저는 안정된 정치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정치적 대표 불능과 잘못 설정된 틀로 인해서 발생하는 메타 정치적 부정의를 구별하여 논의하기도 한다(SJ, 62쪽). 잘못 설정된 틀은 배제와 포용의 기준과 경계를 잘못 설정한 결과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근본적으로 공동체로부터 배제해 버리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국적 내지는 시민권이라는 기준에만 의거하여 난민이나 미등록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경우를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3) 지구적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의 도덕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증의 예로는 피터 싱어, 김희정 옮김, 『세계화의 윤리』, 아카넷, 2003, 195쪽 이하 참조.

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휴머니즘 원칙은 인간성을 공유하는 모든 개인들이 정의의 주체이자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⁴⁾ 그러나 이 두 주장의 경우 전자는 잘못 설정된 틀이 야기하는 부정의 자체를 무시하고, 후자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각각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프레이저는 그간 “관련된 모든 당사자 원칙(the all-affected principle) 이 정의의 당사자 문제를 해결하는 유망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관련된 모든 당사자 원칙 역시 나비효과 사례로 인해서 관련성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만일 나비효과 개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매개 사건이 다른 모든 사건들과 관련된다면, 이 원칙은 모든 사안에 대해 지구 인류 전체가 참여하여 관련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SJ, 40쪽). 그렇기 때문에 프레이저는 관련 사안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종속되는 사람들, 그 결정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당사자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나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기구들, 환경규제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초국적 기구들은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거대한 인구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며 그런 한에서 이들은 그러한 기구들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J, 66쪽). 이러한 원칙은 정의의 당사자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배타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휴머니즘 원칙의 추상성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을 현실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게 될 것이지만, 이 원칙이 다양한 층위에서의 당사자 규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만은 원칙적으로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칙은 사안

24) 세계시민주의자들은 모든 개인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모든 도덕적 판단과 권리의 단위를 개인들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롤즈는 개인, 국민국가, 국가간 관계 차원에 상이한 도덕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다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Thomas Nagel, “The Problem of Global Justice”, 124쪽.

에 따라서 소규모 지방 단위의 당사자, 국민국가 단위의 당사자, 지역 단위의 당사자, 지구적 당사자라는 다층적 당사자 규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지방화와 지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glocalization)에도 원칙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정의의 방법: 비판적-민주적 접근

국민국가 틀의 동요는 그간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정의의 내용과 당사자 문제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며,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국가 단위의 사고에서는 특히 당사자 문제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정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영토국가의 시민들 뿐이라는 사실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 문제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설명 그러한 논란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는 주로 국가나 엘리트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

그러나 지구화 과정이 진척되면서 오늘날 정의의 당사자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주의자, 국제주의자, 세계시민주의자 사이의 논쟁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 속에서 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의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주체화 되지 않았으며, 각각의 입장들은 암묵적으로 표준사회과학적 논의에 호소하는 태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SJ, 36). 기존의 세 입장들이 각각 당사자 문제를 결정하는 데서 특정한 사회과학적 견해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 문제에 대한 기존의 세 입장들은 공히 원초적 상황에서의 합의라는 롤즈의 모델을 차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에 대한 지식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본적인 사실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각각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국가주의자들은 당사자들

이 자신들의 삶이 주로 국민국가 내부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알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국제주의자들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이 국민국가 내부의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도 동시에 결정된다고 알고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주의자들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이 국민국가 내부의 요인보다도 지구적 요인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본다.²⁵⁾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각각 당사자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내용들은 사실상 특정한 경험 사회과학적 견해를 투영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각각 특정한 사회과학적 견해를 무반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프레이저는 사실상 표준사회과학적 합의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과학적 논의 그 자체는 특정한 이론적 관점과 정치적 편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미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에 기초하여 프레이저는 오늘날 사회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판적-민주적(critical-democratic)’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J, 41). 이러한 방법은 사회과학적 논의의 내용들을 수용하면서도 그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며, 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변화, 즉 사회정의론에서 민주적 정의론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²⁶⁾

25) 지구적 정의에 대한 국가주의자들의 비판과 지구화론자들의 반박 요지에 대해서는 Rainer Forst, “A Critical Theory of Transnational Justice in *Global Justice*, ed. Thomas W. Pogge, Blackwell, 2001, 170쪽 이하 참조. 그에 따르면 양자 사이의 주요 논쟁점들은 분배 정의를 논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협력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 지구적 재분배가 함축하는 세계정부의 위험성, 특수한 공동체로서 국가가 가지는 윤리적 의미,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 지구적 재분배의 지문화중심주의적 함의 등이다.

26) 당사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적 정의론을 구상하려는 시도들로 프레이저는 Seyla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러한 접근은 대화적인 동시에 제도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먼저 실증과학의 독백적인 접근을 넘어서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사회과학적 견해는 그 자체가 이미 다양한 해석과 정치적 입장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민주적 접근은 다양한 견해들이 가지는 해석들과 정치적 입장들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논쟁적 대화만이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대화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이와 같이 대화만이 유일한 갈등의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대화 그 자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대화는 논의의 종결과 합의된 사항의 실행을 위해서 그를 뒷받침할 실천력 있는 제도들을 필요로 한다.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러한 구상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도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서 공론은 민주적 정당성과 동시에 유효성을 가져야만 한다. 사회정의에 관한 공론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논의에 참여시킬 수 있는 포용성과 의견 제시와 발언, 비판에서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의에 관한 공론이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공론이 입법부의 결정을 통해서 법으로 번역될 수 있어야만 하며, 또한 행정부는 그러한 입법부의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²⁷⁾

그러나 문제는 지구화 하는 조건에서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초국적 공론들의 경우 아직은 이러한 여러 조건들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초국적 공론의 경우 국가 단위 공론과는 달리 포용성과 동등한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

2004); Rainer Forst, *Contexts of Justice*(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Jürgen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trans. William Rehg(Cambridge, MA: MIT Press, 1996) 등을 제시하고 있다(SJ, 28쪽, 각주 31). 그러나 프레이저는 이들이 민주적 접근을 정의의 내용 문제에 적용했을 뿐 당사자 문제, 즉 틀의 설정의 문제에 적용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27)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SJ, 5장 참조.

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공론은 그것의 공동의 의지를 번역해낼 입법부도 그 결정을 실행할 행정부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비판적-민주적 접근이 지구적 규모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제도적 변화와 조건들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²⁸⁾

요약하자면, 오늘날 사회정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의론은 정의의 내용, 당사자, 방법에 대해서 전면적인 새로운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 첫째, 정의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분배 정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의의 요구의 내용들을 포섭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정의의 당사자와 관련하여서는 국민국가 시민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당사자의 범위를 넓히고 다층화 하며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도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정의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정의의 내용과 당사자에 관한 논의를 확대시키고, 그에 대한 참여의 폭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민주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노력과 접근들은 기존에 은폐되어 왔던 사회적 부정의들을 폭로하고 이에 대해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판적 검토와 실천적 함의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화 시대의 정의에 관한 프레이저 논의의 중심 내용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한 후 지구화 시대의 정의론에 관한 이상의 논의가 오늘날 가지는 실천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프레이저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프레이저의 삼차원적인 정의론이 현대적 부정의와 사회갈등의 주요한 원천인 물

28) 이러한 제도적 조건이 부재한 상황 때문에 당분간 국민국가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틀을 민주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노력들은 초국적 시민사회에서의 저항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SJ, 26, 각주30).

화(物化)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정의의 당사자를 규정하는 원칙에 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두고자 한다.

먼저 정의의 내용과 관련된 프레이저의 논의와 관련하여 분배, 인정, 대표라는 그녀의 3차원적 정의관이 전통적인 사회적 삶의 물화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프레이저의 정의론은 경제, 문화, 정치 각 영역에 고유한 부정의들을 지적함으로써 분배중심의 기존 정의론과 문화적 차원의 인정일원론이 각각 자기고 있는 한계를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⁹⁾ 뿐만 아니라 그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배와 인정 이외에 대표의 문제를 새롭게 지적함으로써 정치적 차원에 존재하는 부정의 역시 자신의 정의론 내부에 포섭해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이저는 경제, 문화, 정치의 영역들 각각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부정의들을 해명하는 데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 사이의 교차와 중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삶의 물화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식민화 체계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체계의 매체인 화폐와 권력이 우리의 생활세계에 침투하는 경우 합리적 의사소통에 기초한 생활세계 질서가 물화되는 병리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삶의 물화는 문화적 차원의 의미상실, 규범적 아노미 상태, 심리적 병리현상 등 포괄적인 사회적 병리현상을 동반한다. 나아가서 그는 신사회 운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병리적 상황들이 ‘삶의 질’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갈등들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환경, 교육, 인권 등을 주제로 하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갈등은 현대사회 갈등의 핵심 축 중 하나이며, 삶의 물화는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전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분배나

29) 이러한 관점에서의 평가에 대해서는 백미연, 「‘재분배’와 ‘정체성’을 넘어 ‘참여의 평등’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1호, 2009 참조.

인정과 관련된 부정의와는 그 성격상 차별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주요한 사회적 부정의와 갈등의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은 현대사회의 다층적 부정의에 대한 진단이라는 비판사회이론의 과제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만 할 것이다.³⁰⁾

다음으로 정의의 당사자 및 방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기존의 국민국가 틀이 가지는 제한성을 지적하는 것은 분명 유의미한 일이며,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차원의 지구적 정의를 고려할 때 정의의 당사자와 방법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 하에서 지구적 정의와 관련된 민주적 합의를 모색하고자 하는 프레이저의 논의는 여전히 추상적인 규범적 논의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³¹⁾

예를 들어 프레이저가 빈번히 언급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 지구적 빈곤층에 대한 재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원리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단일한 ‘세계 정부’에 대한 상정을 함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³²⁾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국가의 경험을 고려할 때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은 결국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행정 체계와 세금징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 질서가 복잡하게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적 빈곤문제와 관

30)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김원식, 『생활세계 식민주의론의 재구성: 배제, 물화, 무시』, 『사회와 철학』 18호, 2009 참조.

31) 프레이저 자신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녀는 제도적 설계나 구상보다는 기본적인 개념 틀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설계나 구상과 관련하여 그녀는 단지 국가 단위의 제도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제도 설계를 가능할 것이라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다.

32) 프레이저 자신은 영도국가의 폐기나 단일한 틀의 설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국가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의 틀에 대해 적극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한 곳에서 그녀는 국민국가 틀의 존속, 다차원적 제도의 공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SJ, 43쪽).

련하여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을 직접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일종의 세계정부가 성립되는 경우이나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구적 정의와 관련된 프레이저의 논의가 이러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면, 이는 현실성 없는 규범적 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³³⁾ 현존하는 문화적 이질성과 불평등한 경제 및 권력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정부에 대한 구상은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하버마스가 ‘세계정부 없는 세계 내정’에 관한 그의 구상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국가 형성 과정을 지구적 차원에서 반복하고자 하는 세계공화국 구상은 현실성이 부족한 구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법을 구현하기 위한 유일한 개념적 대안도 아니다.³⁴⁾

때문에 하버마스는 ‘국제법의 입헌화’ 기획을 통해서 평화와 인권의 문제와 같은 시급한 현안 문제들을 초국적 공론장의 힘을 바탕으로 UN과 같은 초국적 기구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면서, 다양한 국가 간 협력 제도 및 기구들을 활성화 하는 다차원적인 접근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구상을 제시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국민국가 단위에서만 가능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한에서 초국적 제도나 다국적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은 결국 국민국가 단위의 민주적 정당성에 간접적

33) 칼훈의 지적에 따르면, 세계시민주의자들은 국가/민족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서 올바른 입장을 보여주지만, 그러한 비판을 넘어서 그들이 보다 집중화된 세계 정부로 비약하게 되는 경우 약점을 드러내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안이 그것을 뒷받침할 집단적식이나 연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공허하거나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Craig Calhoun, “The Class Consciousness of Frequent Travellers: Towards a Critic of Actually Existing Cosmopolitanism, in *Debating Cosmopolitanism*, ed. Daniel Archibugi, Verso, 2003, 95쪽, 97-98쪽.

34) 위르겐 하버마스, 장은주 옮김, 『분열된 서구』, 나남, 2009, 147쪽 이하 참조. 하버마스는 국제법의 입헌화 과정이 국민국가 형성의 경우와는 반대로, 즉 먼저 헌법이 구성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정치권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을 지구적 차원에서 적용하려는 프레이저의 시도는 그 제도적 내용과 구상 면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적 정의에 관한 이상의 논의가 실천적으로 함축하는 바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면서 논의를 정리하도록 하자. 먼저 지구적 정의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오늘날 우리가 지구화에 대한 대응의 원칙과 방향이 없이는 우리 내부의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하기도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화의 흐름은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기존 갈등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부정의들 역시 산출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가속화되는 경쟁은 우리 내부에 새로운 경쟁의 압력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주자 문제와 같이 새로운 도전들 역시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레이저가 제시한 다차원적인 정의론 구상은 현재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복합적 사회갈등의 성격을 해명하고 그에 대응해 나가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가속화 되는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산출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부정의들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이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다루어 나가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구적 경쟁의 압력이 야기하는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배제의 문제, 이주자의 유입으로 인한 문화적 정체성 인정의 문제, 사회적 삶의 물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갈등 등에 대해서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또한 국민국가 틀을 넘어서는 정의의 당사자 및 방법과 관련된 논의는 이러한 내부적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관심을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문제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단순한 ‘국익’의 논리를 넘어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문제에 대처해 나아가야만 한다. 오늘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지구적 조망 하에서 내부의 문제를 진단하고, 다시 내부의 시선을

둘러 지구적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절실히 요구 받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연구위원)

참고문헌

- 김원식, 「생활세계 식민주의론의 재구성: 배제, 물화, 무시」, 『사회와 철학』 18호, 2009.
- 김원식, 「인정과 재분배」, 『사회와 철학』 17호, 2009.
- 김원식, 「인권의 근거: 후쿠야마와 하버마스의 경우」, 『사회와 철학』 13호, 2007.
- 마이클 월저, 정원섭 외 옮김, 『정의와 다원적 평등-정의의 영역들-』, 철학과 현실사, 1999.
- 문성훈, 「칸트의 세계시민사회이념과 인정」, 『사회와 철학』 19호, 2010.
- 백미연, 「‘재분배’와 ‘정체성’을 넘어 ‘참여의 평등’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1호, 2009.
- 백미연, 「글로벌 시대 정의의 범위」,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2009.
- 백승욱 편, 『뉴레프트리뷰』, 길, 2009.
- 위르겐 하버마스, 장은주 옮김, 『분열된 서구』, 나남, 2009.
- 이유선, 『리처드 로티』, 이룸, 2003.
- 존 롤즈, 장동진 외 옮김, 『만민법』, 아카넷, 2009.
- 존 롤즈, 황경식 옮김, 『사회정의론』, 서광사, 1985.
- 토마스 쿤, 김명자 옮김, 『과학혁명의 구조』, 동아출판사, 1995.
- 피터 싱어, 김희정 옮김, 『세계화의 윤리』, 아카넷, 2003.
- Judith Butler, *Frames of War*. Verso, 2009.
- Craig Calhoun, “The Class Consciousness of Frequent Travellers: Towards a Critic of Actually Existing Cosmopolitanism, in *Debating Cosmopolitanism*, ed. Daniel Archibugi, Verso, 2003.
- Leonard C. Feldman, “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the State: The Irreducibly Political Dimension of Injustice”, *Political Theory*, Vol 30, 2002년 6월.

- Nancy Fraser and Axel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2003.
- Nancy Fraser, *Scales of Jus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 Nancy Fraser, Alfredo Gomez-Muller, Gabriel Rockhill, “Global Justice and the Renewal of Critical Theory, A Dialogue with Nancy Fraser”, *Eurozine*, www.eurozine.com, 2009.4.1
- Rainer Forst, “A Critical Theory of Transnational Justice in *Global Justice*, ed. Thomas W. Pogge, Blackwell, 2001
- Thomas Nagel, “The Problem of Global Justic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3, 2, 2005 봄.
- Thomas W. Pogge, “Priorities of Global Justice in *Global Justice*, ed. Thomas W. Pogge, Blackwell, 2001.
- Zygmunt Bauman, *Identity*, Polity Press, 2004.

Justic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 Critical Examination of Nancy Fraser's Theory of Justice

Woen-sick Kim

Today the accelerating globalization is shaking the framework of nation state, which has ruled an basic international order. This asks us for thinking a deep grammar of justice in a new way and scale.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various challenges to a theory of justice given by globalization and the principal orientations for coping with them. For this aim, firstly, I examined the various challenges to a theory of justic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he principal orientations for coping with them, according to the distinction of content of justice(what), subject of justice(who), way of justice(how), which was used by Nancy Fraser. And then I examined Fraser's theory of justice critically and explaine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critical examinations.

Key Words: Global Justice, Theory of Justice, Nancy Fraser

김원식 e-mail: wonsik1@hanmail.net

투 고 일	2010년 09월 03일
심 사 일	2010년 09월 03일
계 재 확정	2010년 09월 27일